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600

발의연월일: 2022. 5. 13.

발 의 자:김회재·강득구·김민철

남인순 · 문정복 · 양정숙

양향자 • 이상민 • 이성만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하천구역 안에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활동조차 제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설치시설의 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인 반

려견의 운동·휴식을 지원하는 한편, 하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8조 및 제98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 대상동물"이라 한다)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하천관리청은 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하천구역에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받은 토지 및 해당 설치시설의 오염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① 하천관리청은 제10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받은 자 또는 전대받은 자에게 직접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제4항"을 "제4항(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3조제11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 입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 ~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 4 |
| 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 |
|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 | |
| 서는 아니 된다. | <u></u>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 3 |
| <u>행위</u> <u><단서 신설></u> | <u>행위.</u> <u>다만, 「동물보호법」</u> |
| |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 |
| | 동물(이하 "등록대상동물"이 |
| | 라 한다)을 위한 운동・휴식 |
| |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그 |
| |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4. • 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⑤ ~ ⑨ (생 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⑩ 하천관리청은 제4항제3호 |
| | 단서에 따라 하천구역에 등록 |
| | 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 |
| | 설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하 |
| | 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해 |

<신 설>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 ·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 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당 설치시설의 오염 실태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① 하천관리청은 제10항에 따 른 검사 결과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 요한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하천점 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3조제5 항 단서에 따라 임대하거나 전 대한 경우에는 임대받은 자 또 는 전대받은 자에게 직접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 유)

- 항(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신 설></u>

② ~ ④ (생 략)

- 1. 제33조제11항에 따른 하천관

 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토지에 출입한 자
- ② ~ ④ (현행과 같음)